# 대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 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이종배·엄태영·김상훈

강대식 • 배준영 • 안철수

이인선 · 김성원 · 김승수

송석준 · 이양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,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

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제1항, 제43조제4항, 제44조제2항, 제44조의5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"관리한다"를 "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(특별 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 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관리한다"로 한다.

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"를 "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44조제2항제1호 중 "100분의 6"을 "100분의 10"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"100분의 22"를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5(댐용수의 우선공급)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댐 주변지역에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관리청,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·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5조(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) 제5조(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)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 ① -----대 주변 다. 다만, 시·도지사 또는 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(특별자 장 · 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가 을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관리한다. 이하 같다) · 군수 또는 구청장 (이하 "시장・군수 또는 구청 장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관리한다. -----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43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) ① 제43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) ① ~ ③ (생 략)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시행한다. 수 또는 구청장이-----. 1.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| <삭 제> 2.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<삭 제> 장・군수 또는 구청장 ⑤ (생 략) ⑤ (현행과 같음) 제44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 제44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

- 원) ① (생략)
- ② 댐관리청,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·공업용수댐의 수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
- 전전년도 발전판매(發電販賣)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
   전전년도 생활용수・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이내
- ③ (생 략)

<신 설>

| 원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
| ②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1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u>100분의 10</u>     |
| 2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u>100분의 30</u>     |
| _                   |
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제44조의5(댐용수의 우선공급) 댐 |
| 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     |
|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     |
|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    |
| 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에     |
|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     |
| 다                   |